

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579호
2. 발 의 자 : 강동길 의원
3. 발의일자 : 2025년 03월 31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04월 02일

II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른 '방재 신기술'이 삭제되고 ' 22.1월 제정된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른 '재난안전신기술'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가. 본 조례에서 혁신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신기술 중 '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방재신기술'을 '「재난안전산업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재난안전신기술'로 변경함.(안 제2조제2호다목)

IV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V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1월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규정된 ‘방재신기술’이란 용어가 ‘재난안전신기술’로 대체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하기 위해 발의됨.

2. 개정안 검토

- 동 조례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에 제정됨.
- 제정 당시 동 조례 제2조(정의)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‘혁신기술’로 정의하고 그 중 하나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포함하였음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1.12.30>

1. "4차 산업혁명"이란 과학기술·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·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.
2. "혁신기술"이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하며,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.
 - 가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신기술
 - 나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
 - 다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방재신기술**
 - 라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
 - 마.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3. "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"이란 기술기반의 중소·벤처기업 등 기업육성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·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.
4. "디지털 전환"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·경제·사회·문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.

- 이후 국회에서는 국내 재난안전 기술 분야의 기업자생력 강화와 4차산업 및 IoT 융합 신기술 개발 등의 지원체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을 제정(2022.1월)하면서 기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의 ‘방재신기술’은 삭제됨.
- 이에 따라 동 조례의 제2조제2호다목도 새롭게 제정된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4조를 인용한 ‘재난안전신기술¹⁾’로 개정되어야 했지만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, 이를 현행화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임.
- 다만 법 개정 이후 2년 이상 조례가 현실에 맞게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.

입법조사관	연락처
이성찬	02-2180-8061

1) ‘재난안전신기술’이란 기존 ‘방재신기술’이 다루던 자연재해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·안전관리 전반의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임.